

#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75호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0. 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기 위함.

## 2. 주요골자

-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 완화 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.

## 4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3호 중 “전학”을 “전출”로 하고, 동조 제4호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6조(지급정지) (생략)</b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타시·군으로 <u>전학</u>하였을때</p> <p>4. <u>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</u> <u>사용하였을때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<b>제6조(지급정지)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타시·군으로 <u>전출</u>하였을때</p> <p>4. (삭제)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